

2026년도 하반기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안내자료

I 사업목적

- 전임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박사급 연구인력 확보
- 박사후연구원(연구교수 포함)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과제 수행 지원
- * 박사후연구원 :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에 소속되어 전공 분야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고정급을 받는 계약직 연구원
- * 연구교수 : 연구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된 비전임 교원

II 2026년 하반기 지원 계획

□ 지원대상

-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간접비 징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 책임자로서, 연구 수행을 위해 박사후연구원(연구교수 포함)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임교원

〈 지원제외 대상 〉

- 교내 연구비 및 학술연구진흥사업 결과물 미제출 등으로 인한 제재대상자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- 선정인원 : 00명
- 지원기간 : 활용시점부터 1년

□ 지원조건

-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연구과제에서 **본 사업 지원금 포함 2026년 최저임금(2,156,880원)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원**
 - ※ 본 사업 지원금: 월 급여액 923,080원(인건비 1,200,000원 상당)
 - ※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여 월 급여 1,233,800원 이상 지급
 - ※ 지도교수 연구과제 및 연구원 본인 과제에서도 총당 가능. 단, 지도교수 연구과제 부담액 60만원 초과 부담해야 함
 - ※ 지원기간 중 최저시급 인상 시 연구책임자가 상승된 급여를 부담해야 함
 - ※ 대응자금(대학회계)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미포함

○ 박사후연구원 6개월 이상 활용(최소 6개월~최대 1년)

□ 지원내역

○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에서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중 일정액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

〈 2026년 박사후연구원 1인당 연 지원액 〉

인건비(월급여+퇴직금)	4대보험 기관부담금	총 지원액
12,000,000원 (1,000,000원×12개월)	약 1,200,000원 (약 100,000원×12개월)	약 13,200,000원

※ 일반, 대학중점연구소, RLRC, LAMP 모두 해당

※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원금에 해당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만 지원,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해당 과제 직접비에서 지급해야 함

※ 4대보험 및 세금의 본인부담금은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

○ 연구소 소속으로 연구원 인사 발령(총장 발령)을 통한 연구경력 인정

□ (일반) 선정기준 :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

구 분	유형1) 신규지원자 〈과거 지원이력이 없는 경우〉	유형2) 기지원자 〈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〉
선정 비율	30%	70%
신청 자격	○ 신규 신청 전임교원	○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 3,000만원 이상인 전임교원
선정 기준	○ ①신규지원자 중 간접비 상위자 선정 ○ ②(기지원자+신규지원 미선정자(간접비 3천만원 이상)) 중 간접비 상위자 선정 ○ 간접비 징수액이 같은 경우 전년도 연구비 수주금액 상위자 우선 선정 ○ 활용 박사후연구원(연구교수 포함)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전임교원 간접비 징수액과 합산하여 선정(단, 합산 실적으로 선정된 경우 박사후연구원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시 지원 종료) ○ 인문사회/예·체능계열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 1,000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중 상위자 선정	

- 1) 전임교원 1인당 박사후연구원 활용 인원은 최대 1명(사업기반지원과 일반지원 간 중복 지원 불가)
- 2) 활용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역량까지 포함하여 선정하기 위해, 박사후연구원 본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 간접비 징수액도 포함하여 선정
- 3) 인문사회/예·체능 계열은 신규와 기지원 구분없이 선정(선정자가 없을시 자연/의학/공학계열에서 선정)

VI

신청방법

□ 지원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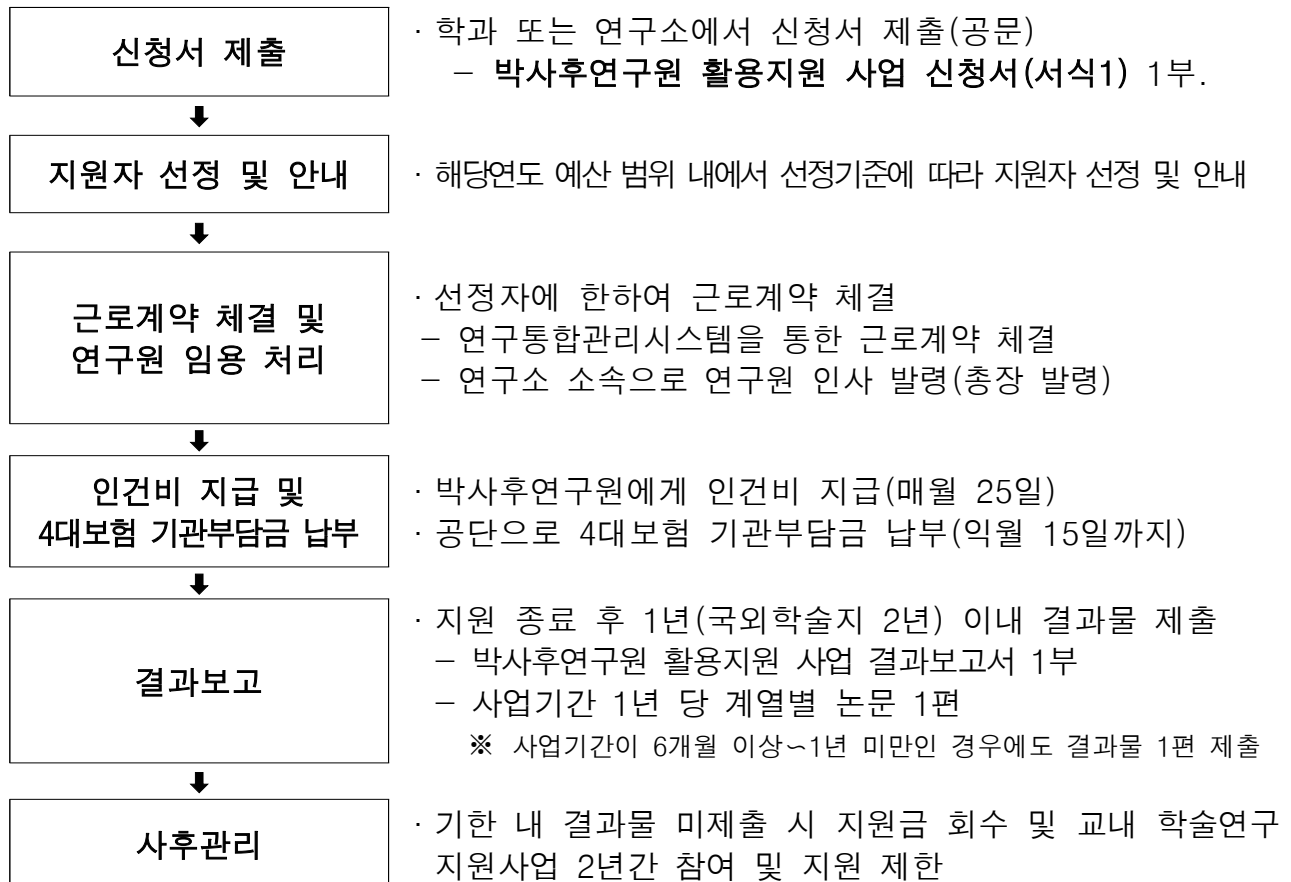
○ (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)

구 분	상반기	하반기
신청대상	활용시작일 : 2026. 3. 1.~2026. 8. 31.	활용시작일 : 2026. 9. 1.~2027. 2. 28.
신청기간	2026년 1월 6일 ~ 1월 19일	2026년 7월 14일 ~ 7월 24일

○ (제출서류)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 사업 신청서 1부

○ (제출방법)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전자공문 신청

□ 지원절차



□ 근로계약 체결

○ (계약체결기한) 박사후연구원 활용 시작 10일 전까지

○ (계약체결방법) 산학협력단 근로계약 업무담당자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☞ (산학경영지원부 인사팀 장나린 250-8267, 950713@kangwon.ac.kr)

- (기타사항) 박사후연구원이 외국인일 경우, 비자발급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신청 시 참고하여 활용기간을 설정

V 의무사항

□ 결과물 의무 제출

- (제출기한) 지원 종료 후 1년(국제전문학술지 2년) 이내
- (제출내역)
 - 사업 결과보고서 1부
 - **사업기간 1년 당 계열별 논문 1편**
 - 인문사회/예·체능계열 :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
 - 자연/의학/공학계열 : SCI(E), SCOPUS 학술지
 - ※ 활용 전임교원이 주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이고 박사후연구원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함
 - ※ 사업기간 중 박사후연구원이 변경된 경우, 변경 전·후 박사후연구원 중 1인 이상이 저자로 참여
 - ※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~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결과물 1편 제출
- (제출 면제 사항) 지원 시작 후 6개월 이전 박사후연구원이 사직하여 지원 중단한 경우 결과물 제출 면제
- (제재 사항) 제출기한 내 결과물 미제출 또는 제출한 결과물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또는 결과물 제출 시까지 교내 학술연구 지원사업 지원 제한

□ 기타사항

- 연구과제 중단 및 박사후연구원 이직 등의 사유로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, 사유 발생 시점부터 지원은 중단함
- 박사후연구원 최종선정 후 활용시작일 10일 전까지 근로계약체결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, 동기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박사후연구원 및 기간 변경 필요 시 <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변경신청서>를 제출하여야 함

- ※ 활용기간 변경은 활용시작일이 2026년 회계연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
-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변경신청서를 미제출 시, 활용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동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중단
- 박사후연구원 6개월 미만 고용 2회 이상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지원 불가

Ⅵ 추진일정

□ 2026년도 하반기

- '26.07.24 2026년 하반기 지원자 신청서 접수
- '26.07.31 2026년 하반기 지원 대상자 선정
- '26.08.03 2026년 하반기 지원 선정자 공지·안내
- '26.08.18 2026년 하반기 지원 선정자 임용 및 근로계약
- '26.09.01~ 2026년 하반기 박사후연구원 선정자 지원. 끝.

※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